

##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5. 28 화순군수  
나. 회부일자 : 97. 5. 28  
다. 상정일자 : 97. 6. 24 (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자 : 내무과장 이수철

나.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읍·면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
-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,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읍·면장이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으로서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기존의 별정직 읍·면장도 포함시킴 (안 제2조 제1항)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부녀상담원, 아동복지지도원, 농기계교관, 사회복지전문요원, 보건진료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(안 제2조 제3항)
-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,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운영 (안 부칙 제2항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민병향)

- 동조례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부 :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-61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5. 28

제출자 : 화순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읍·면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
-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읍·면장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으로서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기존의 별정직 읍·면장도 포함시킴  
(안 제2조 제1항)
- 동 조례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부녀상담원, 아동복지지도원, 농기계교관, 사회복지전문요원, 보건진료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
(안 제2조 제3항)
-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,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등에관한 조례에 통합운영 (부칙 안 제2항)

## 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적용 범위) ①이 조례는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공무원 중 읍·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(이하 "별정 직 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 무원은 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으로 본다.</p>	<p>제2조 (적용 범위) ①이 조례는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(이하 "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) 에게 적용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부녀상담원</li> <li>2. 아동복리지도원</li> <li>3. 농기계교관</li> <li>4. 사회복지전문요원</li> <li>5. 보건진료원</li> </ul>
<p>제4조 (임용자격)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.</p>	<p>제4조 (임용자격) ①법 제31조 각호의 1 ..... .....</p>
<p>제9조 (당연퇴직)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</p>	<p>제9조 (당연퇴직) .....</p> <p>각호의 1 .....</p> <p>.....</p>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 (휴직) 1. (생략) 2. 형사사건으로 <u>기소된 때</u> (약식 명령 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.)	제11조 (당연퇴직) . . . . . 각호의 1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
제14조 (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 용)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	제14조 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 용) .